

대 체 역 의 편 입 및 복 무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소집 연기 등(안 제2조부터 제4조)

대체역 편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와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 서식 등을 정함.

나. 위원 추천 시 제출서류(안 제5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인도·인접서 등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등(안 제11조부터 제16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실태 점검결과 및 신상변동 통지 서식 등을 정함.

마.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절차 등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서식을 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령 제 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체역 편입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부모 및 본인과 친분이 있는 3명 이상의 주변인 진술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등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

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7.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만 제출한다)

8. 그 밖에 법 제3조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체역 편입신청 징·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거나,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연기 대상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 추천)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위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이력서
3.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장 대체역의 복무

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인접서 등)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인도·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일수 등)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별표와 같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가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결과 통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결과서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20호서식,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순서 명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대상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소속 기관 등의 장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사유 해소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받거나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병무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순서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① 병무청장은 영 제49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대체복무요원의 휴가일수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사유	일수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청원휴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직계가족의 질병·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공가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필요한 기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한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때	
특별휴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유튜브/인스타그램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연도			신체등급 급	
		신청자격 ☐ 현역병입영 대상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 예비역 ☐ 복무만료 보충역				
	이력					
	학력	학교명	기간(부터 ~ 까지)	전공학과	졸업여부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경력	직장(단체)명	기간(부터 ~ 까지)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구분	[] 종교	[] 개인신념	소속단체(명)
	신도/회원 인정여부	[] 인정	[] 미인정	인정일자 년 월 일
	신청이유			

10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체역 심사위원회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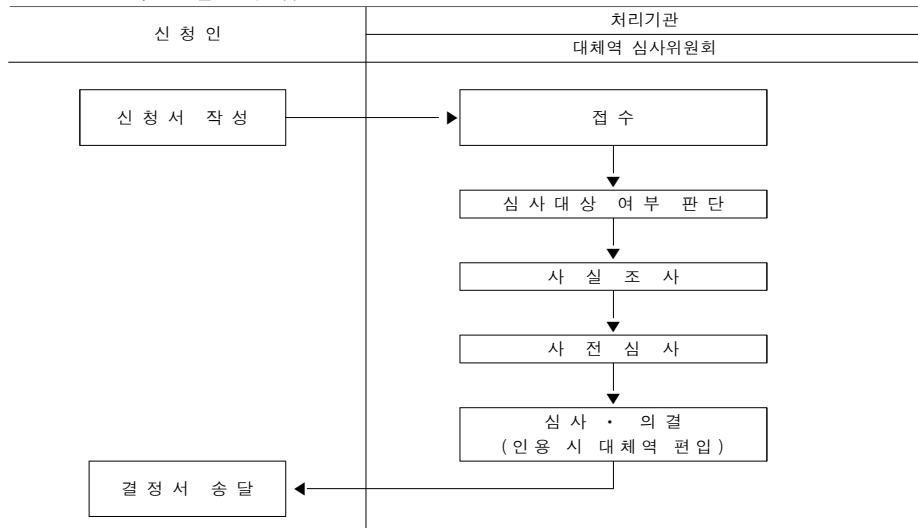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본인 진술서 2. 본인의 부모 및 본인과 친분이 있는 3명 이상의 주변인 진술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등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6. 교리에 따를 경우 헌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종교단체에서 발급한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7. 그 밖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신청인	1. 접수번호, 접수일은 적지 않습니다. 2. 병역사항은 최종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연도와 신체등급을 적고, 신청자격을 대체역 편입신청 현재 해당 하는 병역사항에 체크합니다. 3. 학력은 신청인의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해당되는 학력을 모두 적습니다. 기간은 연, 월까지 적고, 전공 학과는 해당되는 경우만 적으며, 졸업여부는 해당학교의 졸업,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여부를 적습니다. 소재지는 해당학교의 시·군·구 소재지를 적습니다. 4. 경력은 신청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주요 직장이나 단체 활동경력을 적습니다. 기간은 연, 월까지 적고, 소재지는 해당 직장(단체)의 시·군·구 소재지를 적습니다.
	신청내용	1. 구분은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 종교에 따른 것인지, 평화주의 등 개인신념에 따른 것인지를 체크합니다. 2. 소속단체(명)는 현재 소속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 3. 신도/회원 인정 여부는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세례 등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거나,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4. 인정일자 3년의 종교단체에서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거나,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날짜를 적습니다. 5. 신청이유는 헌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편입 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 종교에 따른 경우 구체적인 종교의 교리내용을 적고, 개인신념에 따른 경우 어떤 이유로 헌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할 수 없는지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위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병역법」 제88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위 진술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진술내용은 대체적 편집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하 “양심”)의 구체적 내용, 양심을 갖게 된 경위, 그러한 양심에 따라 주요 활동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기재만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첨부합니다.
2. 양심의 구체적 내용은 양심이 종교에 따른 경우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관련근거를 제시하며, 그러한 교리가 군 복무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양심이 개인신념에 따른 경우 신칭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단체에 속한 경우 단체 이념(정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작성하고, 그러한 신념 또는 이념(정관)의 내용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양심을 갖게 된 경위는 신청인이 살아온 성장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는 사회경험 등 전반에서 그러한 양심을 갖게 된 과정과 계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 양심에 따라 주요 활동한 내용은 신청인이 양심에 근거하여 그동안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였던 이력을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5. 증거서류 범칙목록은 단체 활동이력 등 신청인의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서류(자료)는 별도 첨부합니다.
6. 위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병역법」 제88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 모 · 주 변 인 진 술 서

부 모 · 주 변 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종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 술 내 용	

위 진술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대체역 심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진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명서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합니다)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성장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는 사회경험 등 평소 행실 중에서 부모·주변인이 목격한 신청인의 양심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첨부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병역법」 제91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도 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종교단체 사항	종교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법인(단체)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신도 증명사항	신청인	종교단체 소속일자	년 월 일		
		정식신도 인정일자	년 월 일		
	가족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종교단체 소속일자	정식신도 인정일자

위와 같이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단체장

직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이 증명서는 대체역 편입심사에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단체 사항은 신청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공식명칭, 주소 및 연락처, 해당 종교단체의 법인(단체)등록 여부 및 등록된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록합니다.
- 신도 증명사항 중 신청인의 종교단체 소속일자는 신청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에 최초로 소속된 일자를 기록하고, 신청인의 정식 인정일자는 세례, 침례 등 종교단체에서 정식 신도로서 자격을 갖게 된 일자를 기록합니다.
- 가족의 신도 증명사항은 신청인의 부모, 형제자매 중 동일한 종교를 가진 경우 각 항목별 내용을 기록합니다.
- 각 란에 기록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 기록합니다.
- 담당자란에는 반드시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병역법」 제91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철회 사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합니다.

12 12 15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체역 심사위원회 귀중

유 의 사 항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한 이후 다시 편입신청을 하게 될 경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철회 신청서 작성	➔	접수
-----------	---	----

신청인

대체역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m²]

대체역 편입신청 징·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m²]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서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소속 및 직위(직책)	추천자격 (법 제5조제2항 각 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직인

이력서

인적사항	성명(한자)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현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직책)	
	주소		전자우편주소	
학력 등	학교명		전공	학위 (최종학위 수여일 기재)
경력	기간	소속	직위(직책)	기타
대체복무, 인권 등 관련 분야 활동내용				

년 월 일

위원 후보자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집행)계획서

[illegible]

- 20 -

대체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illegible]

- 21 -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소집 통지서

통지번호: * 뒤 쪽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체복무요원 소집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집일시	소집기간	
소집장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 예비수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뒷면 “여비수령 및 반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비지급 내역/시기 : 소집여비 원(소집 후 5일 이내)

여비지급 방법 : 계좌입금(단, 병무청 등록계좌가 없어서 아래 “우체국 제출”란에 √ 표시된 사람은 우체국에서 수령)

통지번호_____		소집 여비를 받았을 때 (우체국 수령 시 영수증)	
성명			
생년월일			
소집일			
소집장소			
금액			
◆ 유의사항 여비를 찾으신 후 소집하지 못한 경우 입금 정보 “보내는 분”에 반드시 본인 이름을 적 은 후 아래 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국일부인	
◆ 반납계좌 우체국 000-000-0000000			
(본인 보관용)			

통지번호_____		소집 여비를 찾으실 때	
		[] 계좌입금	[] 우체국 제출
가입자 성명			
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집일/장소			
여비지급기간			
금액	십만	만	천 백 십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취급국일부인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 보관용)			

210mm×297mm[백상지 80g/㎡]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소집 시 유의사항

- 소집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응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복용 중인 의약품은 지참이 가능합니다.
- 합숙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대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므로 활동복, 속옷, 양말, 신발, 세면도구, 필기구, 손톱깎이 등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물품은 대체복무기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 휴직을 하고 소집이 된 사람이 복무를 마치면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복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처벌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소집일 연기 등 안내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일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집일 연기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행방불명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등

○ 소집면제 사유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출원안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대체복무요원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비수령 위임장

소집여비를 아래 사람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위임하여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자(병역의무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대리 수령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관계: 연락처(☎) :

대리 수령자는 신분증 지참

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

○ 앞쪽 하단의 “소집여비를 찾으실 때”의 “우체국 제출”란에 √ 표시된 사람의 소집여비는 지급기간 동안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찾아야 합니다. ☞ 소집통지서(앞쪽 서식), 신분증 지참
※ 여비 지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지청)으로 문의(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하단의 “소집여비를 찾으실 때”의 “계좌입금”란에 √ 표시된 사람은 병무청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여비입금계좌를 등록(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누리집)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여비 지급액은 주소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기 또는 가사사정으로 응소하지 못할 경우 여비를 찾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이미 찾으신 경우에는 앞쪽의 “여비를 받았을 때”에 기재된 유의사항에 따라 찾으신 여비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illegible]297mm×210mm[백상지 80g/m²]

- 24 -

인도 · 인접서

인도 · 인접서

인도 · 인접	인원	인도 · 인접	인원
	장소		장소

()명부에 따라 위와 같이 인도·인접합니다.

()명부에 따라 위와 같이 인도·인접합니다.

$\overline{m}$ $\overline{m}$ $\overline{m}$

1000

인도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도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접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접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m²]

– 25 –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월)

(앞쪽)

가. 소집 현황

시기	구분	계획	통지	%	취소	%	연기	%	기피	%	소집	%
	금월											
누계												

나. 통지내역

시기	구분	계	정상순위	재학생입영원	학적변동	연기해소	국외여행 기간만료	행방불명자 색출	직권말소 재등록	그 밖의 사유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다. 통지 제외 및 취소내역

시기	구분	계	생계곤란	고아	출국	선원	편입취소	소집면제	직권말소	사망	그 밖의 사유
제외	금월										
	누계										
취소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라. 연기사유

시기	사유	계	질병	가사정리	행방불명	출국(대기)	업무	생계곤란	동시재영	경기공연	교육연수	시험	수학	그 밖의 사유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마. 신청사유별 · 편입전 병역사항별(누계)				바. 소집자 연령별 · 학력별(누계)														
신청사유	계	편입신청 이유		연령 학력	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이상	
병역사항		종교	개인신념															
계				계														
현역병 입영대상				중졸이하 고퇴 · 고 졸														
사회복무요원				대 학														
소집대상				대 학원														

사. 기피자 사유별 현황

구분	계	무단 기피	가사 문제	이성 관계	채무 관련	그 밖의 사유	아. 기피자/행방불명자 학력별 현황							
금월							기피	구분	계	대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미만
								금월						
누계							행방 불명	누계						

※ 그 밖의 내역:

지원도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병역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집일			소집통지서 번호		
지원응소 사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도착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병무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대체복무기관	복무기간	소집일	복무기간 만료 예정일	주소	비고

병무청

수신자 소관중앙행정기관장
(경유)
제 목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 통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사항을 통보합니다.

연번	성명	주소	대체복무기관	대체역 편입일
	생년월일			복무만료일

붙임 : 병역증 1부. 끝.

병무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결과서(반기)

(앞쪽)

가. 복무 현황

대체복무기관	구분	이전반기 관리자원	변동 내역					현재 관리자원(업무분야별)						
			증가		감소			계	급식관리	물품관리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	기타*
			소집	전입등	소집해제	전출 등	편입취소							
계														
			</											

※ 기타 내역:

나. 실태점검 결과

대체복무기관	구분	점검일자	복무실태 점검							교정지도 등 복무부실 예방								
			복무 인원	정상 복무	유고 인원				신상변동 통지(건)			관련서류 관리실태(이상유무)				휴가기준 준수여부	보수/여비 이상유무	
					계	휴가	외출 외박	복무 이탈	기타	기일내 통지	지연 통지	미통지	대체복무 요원명부	복무 기록표	신상변동 관련서류			고충처리 관련서류
계																		

※ 신상변동 지연통지/미통지 내역 및 조치결과: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대체복무기관	
	주소	

고충심사 청구 내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체복무기관장 귀하

대체복무요원 명부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m²]

– 34 –

대체역 복무기록표

(앞 쪽)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소관중앙행정기관명

수신자 병무청장
(경유)
제목 신상변동 통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상변동 사항을 통지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대체복무기관	신상변동 사항		비고
				발생일(기간)	내용	

붙임 : 신상변동사항 증빙서류 1부. 끝.

소관중앙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뒤 쪽)

복무기록				
날짜(기간)	복무 또는 신상 변동사항	통보(승인)근거	조치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보수변동사항			
계급	연월일	근거	확인 (서명 또는 인)

상벌관계

실태조사			
날짜(기간)	실태조사 결과	조사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 하단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장 및 직위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류 사유		보류 기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의)

병무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공무원·학생 등: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2. 그 밖에 보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 확인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사유가 해소(면직·퇴직·제적·귀국 등)되었을 때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 1. 신청인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를 희망하는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2. 보류 사유는 대상 직종 또는 질병 등 보류 사유를 기재합니다(보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3. 보류 기간은 입원, 출국 등의 예정일부터 퇴원, 귀국 등의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

※ 하단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장 및 직위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류 해소 사유		

보류 해소일	년 월 일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의)

병무청장 귀하

첨부서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사유 또는 보류 해소 사유와 해소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작성방법

- 1. 신청인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가 해소된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2. 보류 해소 사유는 보류 해소 사유 발생 시 보류 해소 사유(면직·퇴직·제적·귀국 등)를 기재합니다(보류 해소 사유 및 해소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3. 보류 해소일은 보류 사유가 해소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

일련 번호	성명	대체역 편입 전 병역사항	편입신청 이유 (종교, 개인신념)	현역·보충역 ·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일	주소	대체복무기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인도·인접 결과 정리
	생년월일		대체역 편입일					

297mm×210mm[백상지 80g/㎡]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월)

(3쪽 중 제1쪽)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가. 소집 현황

구분 시기	계획	통지	%	취소	%	연기	%	기피	%	인도	%	소집	%
	계	정상순위	보류해소	연기해소	국외여행기간만료	그 밖의 사유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나. 통지 제외 및 취소내역

구분 시기	계	출국	선원	편입취소	소집보류	소집면제	사망	그 밖의 사유
	제외	취소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297mm×210mm[백상지 80g/㎡]

라. 연기사유

사유 시기	계	질병	가사정리	행방불명	출국(대기)	업무	생계곤란	경기공연	교육연수	시험	수학	그 밖의 사유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마. 대체복무기관별 소집 현황

기관 시기	계																
금월																	
누계																	

바. 신청사유별·소집연차별·편입전 병역사항별(누계)

신청사유 병역사항	계	편입신청 이유		소집연차 병역사항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종교	개인신념								
계				계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자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자							
예비역 등 편입자				예비역 등 편입자							

- 44 -

사. 불응자 발생 및 고발 현황

○ 불응사유별

계	무단출타	무단불참	생계곤란	가사사유	개인사업	주요업무	기 타

※ 기타내역:

※ 반복 불응자:

○ 직업별

계	회사원	인허가업소종사자	개인사업	어업	농업	일일노동	야간 유흥업소	무직	기 타

※ 기타내역:

○ 고발결과

구 분	형 사 처 분 내 역									기 타
	계	실형	벌금	구류	선고 및 집행유예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죄·무혐의 공소권없음	사건계류중	
전년도 고발										
금년도 고발										

※ 벌금 부과내역:

